

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-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, 어떤 게 달라졌나요?
 - ☞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!
 - ☞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!
 - ☞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!
 - ☞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! (전산관리 비중↓)

1. 인증개요

-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
-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,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 면제,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

2. 신청대상

-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,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

3.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6. 9. 21.(월) ~ 10. 11.(일), 약 3주간
- (접수방법) 방문 접수, 우편 접수, 온라인 접수 중 택 1
 - 방문/우편 :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·본부·지사
 - 온라인접수 : 이메일(jinsk@kgs.or.kr)로 스캔하여 접수

- (서류제출)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
 - 신청서 : 공사 홈페이지(www.kgs.or.kr/kgs/abbb/tab.do) 다운로드
 - 구비서류 : ①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
 - ②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(해당자만 제출)
 - ③ 가스보험 가입 증권
 - ④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
 - ⑤ 건축물 등기부등본(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)
 - ⑥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
 - ⑦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(건강보험증, 급여명세표 등)
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
- (인증비용) 없음

4. 심사방법

- (심사절차) 예비심사 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) → 최종심사

예비심사(1차)		예비심사(2차)		최종심사
서류심사	⇒	현장실사	⇒	인증위원회
제출서류 검토		판매업소 현장확인		최종 업체 선정

※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

- (심사기준) 3개 분야(기본요건, 사업운영, 공급자의무 준수) 평가
 -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,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,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
 - ※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

5. 심사결과

- (결과통보) 사업자 개별 통지
- (인증기간) 인증일로부터 3년(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)
 - ※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

6. 인증혜택

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(40%) 부여
-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, 안전관리규정확인·평가 면제
-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
-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
 -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,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, 온라인 홍보 등

7. 신청문의

-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: (전화) 043-750-1343 (팩스) 043-750-1917
-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·본부·지사 : (전화) 1544-4500

【첨부】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

[별첨 1]

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			
① 업 체 명			③ 사업자등록 번 호
② 대 표 자	한글		한자
④ 소 재 지	(우 -)		
	전 화	☎() - 팩스	
		H·P :	
	E-mail		
⑤ 신청구분	☐ 신 규 ☐ 재심사		
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			
※ 구비서류 1.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.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(해당하는 자만 제출) 1부 3.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.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<별첨 2> 1부 5.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.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7.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, 급여명세표등) 1부 -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			

[별첨 2]

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

□ 판매사업 기본요건

구 분		현 황	비 고
1. 판매물량	용 기	(톤/월)	○ 월 평균 판매물량 -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
	벌크로리	(톤/월)	
2. 용기보관실 면적 (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)		m ²	○ 19m ² 이상 확보 ○ 19m ² 미만(판매물량 연동 및 최소12m ² 이상)
3. 사무실 면적		m ²	○ 9m ² 이상 ○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
4. 운반자동차 보유대수	용기전용운반차량	대	○ 사업자명의로 확보
	벌크로리	대	
5. 주차장 면적	용기전용운반차량	m ²	○ 법적기준 이상 확보 * 법적기준 - '06.5.3이전 허가 : 10 m ² 이상 - '06.5.3이후 허가 : 11.5m ² 이상
	벌크로리	m ²	
6.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		자가, 임대 년	○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1년이상 인정
7.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		1종, 2종, 미등록	○ 2종이상 등록 인정 (대표자, 공동대표, 배우자명의 인정)
8.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	안전관리책임자	명	○ 사업소 실제근무자 ○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○ 선임신고 사실 증빙 - 안전관리책임자 : 행정관청 신고자료 - 안전관리원 : 자체선임 자료
	안전 관리원	명	
9.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		명	○ 1명(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) 이상 -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○ 고용관련 서류 제출 (건강보험증,급여명세표 등) -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 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
10.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(신청기준일)		유, 무	○ 사고발생 여부
11.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(신청기준일)		유, 무	○ 행정처분 여부
12. 보험가입여부(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)		가입, 미가입	○ 보험가입여부
13.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		유, 무	○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

□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

구 분		현 황		비 고
		용 기	벌크로리 (소형저장탱크)	
1. 총 공급 세대수	총 업소 수	개소 (용기가스소비자 수※ : 개소)	개소	○ 전체 공급세대 수
2.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		개소	개소	○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
3. 공급계약 체결 수 -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, “안전공급계약” 체결 수		· 공 급 계 약 체 결 : 개소	· 공 급 계 약 체 결 : 개소	○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
4.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		개소	개소	○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
5.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		개소	개소	○ 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
6.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		개소	개소	○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
7.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// 전산관리 수		(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) 개소 // (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) 개소		○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
8.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·배포 여부	① 공급계약 체결 스티커	· 부착업소 수 : 매	· 부착업소 수※ : 매	○ 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※ 소형저장탱크의 경우,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
	② 계도물	· 배 포 업 소 : 매	· 배포업소 수 : 매	
9. 가스안전보안관활동, 표창수상 여부 (가점항목)		① 사회공헌 : □가스안전보안관 활동		○ 증빙서류 제출 [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]
		② 표창수상 : □장관 이상, □지자체, □사장 □기 타		
10.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(최근 1년간)		① 지자체 : ()회 참석 ② 공 사 : ()회 참석		○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
11.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		% (※ 호스 사용시설 수 : 개소)		○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
12.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		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: 개소		○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제출
13. 체적 거래율	① 체적 대상	개소	개소	○ 체적공급대상 대비 체적공급 수
	② 체적공급수	개소	개소	

※ 용기가스소비자란,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(단, 자동차연료용,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, 이동식부탄연소기용, 공업용, 선박용,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)

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

□ 기본요건 분야

1 판매물량

-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(단위 : 톤)
 -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
 -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

2~3 용기보관실 면적, 사무실 면적

- 용기보관실 면적
 -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(m^2) 표기
 -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$19m^2$ 이상 필요
 - 사무실 면적
 -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$9m^2$ 이상 필요
- ※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허가증 및 기술검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을 실측하여 m^2 단위로 표기

4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보유대수

-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(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)로 보유 중인 가스전용 운반차량 보유 대수를 작성
 - 자동차등록증 및 고압가스 운반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 (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)가 아닌 운반차량은 미포함
 -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

5 주차장 면적

- 용기보관실 주위에 가스전용운반자동차가 실제 주차 가능한 면적 표시
 -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

6 사업소 본인 소유 여부

- 건축물 등록대장의 소유주와 판매업체 허가증 대표자를 비교하여 본인 소유 여부 확인
 - 임대일 경우 : 임대 1년 이상 인정, 반드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 제출
 - 배우자 소유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7 건설업등록증 내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1종 등록 여부

- 건설업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(본인 명의, 공동대표, 배우자 명의) 확인
 -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/제2종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제출

8~9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,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

-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
 -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수
- 안전관리원 고용인원 수
 - 별크사업자의 경우,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 수
-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(대표자 포함 가능)
 - 실제 용기 운반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
 - 운반자동차 운전자·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업원
 - 종업원 고용서류 제출 : 건강보험증, 급여명세표 등

10~12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, 보험가입 여부

-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(신청일 기준 3년)
-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(신청일 기준 1년)
- 보험가입 여부(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)

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

-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
 - 전체 공급업소 관리,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,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여부

□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

1 총 공급세대 수(용기가스소비자 수)

- 총 공급세대수
 - 용기에 의한 공급업소 수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업소 수 구분
- 용기가스소비자 수
 - 용기가스소비자 :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(단, 자동차 연료용,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, 이동식 부탄연소기용, 공업용, 선박용,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)

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

-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

3 공급계약 체결 수

- 공급업소에 대한 실제 공급계약 체결 수(공급계약서 작성업체 수)
 - 용기가스소비자 :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
 - 소형저장탱크 시설 : 자체 공급계약 체결 수

4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

-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

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

- 총 공급업소 대비 실제 안전점검 업소수(안전점검표 작성 업체 수)

6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

-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

7 가스보일러 공급세대 수 및 전산관리 수

-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관리 수
 - 가스보일러 공급세대가 없는 경우 “보일러 공급세대 없음”으로 표시

8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·배포 여부

- 공급업소 대비 체결확인증 부착율 및 계도물 제작·배포 수 각각 표시

9 가스안전보안관활동, 표창수상 여부(가점항목)

- 가스안전보안관활동, 표창수상여부(증빙서류 제출)
 - 장관·공사 사장상 이상, 자치단체상 등 표창수상
(최근 3년간 가스관련 수상여부)

10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

-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 횟수
 -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포함
(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, 타이머록 보급사업 등)

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

- 공급업소 대비 금속배관 설치업소 비율
 - $\{(총\ 공급업소\ 수 - 호스사용시설\ 수) / 총\ 공급업소\ 수\} \times 100$

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

-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행정관청 제출 여부

13 체적 거래율

- 총 공급업소 대비 체적거래 대상 및 실제 체적거래 공급업소 수